

2000년 공정위 사건처리 실적 및 성과

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총 사건 수는 6,399건으로서 전년 대비 약 17%가 증가하여 '96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. 이러한 증가는 시장 및 소비자 중심으로의 경제환경 변화,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, 거래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.

구 분	1996	1997	1998	1999	2000
접수건수	3,094	3,170	5,249	5,476	6,399
증감율(%)	-	2.5%	66.0%	4.3%	17.0%

2000년에 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건은 1,587건으로 '99년의 1,269건에 비해 25%가 증가하였는데, 경쟁제한성이 큰 위반사건에 대한 집중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'99년에 비해 과징금액 및 고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조치유형별 조치실적 >

구 분	1999	2000
과징금 부과액(증감율)	1,467억원	2,698억원(84%)
고 발(증감율)	11건	22건(100%)
시정조치(증감율)	897건	595건(△33%)
경 고(증감율)	361건	970건(168%)

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면 경쟁제한성이 큰 사건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증가하였고,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기업결합 사건이 증가하고 기업결합신고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하였으며,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하도급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, 최근 공정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 감소 및 거래질서의 정상화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.

< 행위유형별 조치실적 >

(단위:건수)

구 분	고발(과징금) (A)	시정조치(과징금) (B)	경 고 (C)	합계 (A+B+C)
계(과징금 부과)	22(3)	595(46)	970	1,587(49)
기업결합[과태료]	0	3	40[39]	43[39]
경제력 집중	0	12(4)	4	16
부당공동행위	3(3)	32(9)	12	47
사업자 단체	9	78(7)	30	117
불공정 거래	0	262(26)	167	429
불공정하도급	6	152	716	874
불공정 약관	0	55	0	55
기 타	4	1	1	6

* ()는 과징금을 병과한 건수임. []는 과태료 부과건수
*기타는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및 자료 미제출 등임

200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

1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 (1999. 12. 28. 공정거래법 개정, 2001. 4. 1 시행)

-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%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

2.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(2000. 12. 15. 국회의결, 2001. 4. 1부터 효력 발생)

-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2001. 2. 4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2004. 2. 4까지 연장(3년)
- 지주회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를

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- 모든 상장법인(협회등록법인 포함)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을 30%로 완화
-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을 20%로 완화
-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보완
 -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위법사실을 "신고한 자"에 추가하여 "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"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
 - 조사 거부·방해시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개인 5천만원, 법인 2억원으로 상향조정
-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환급하게 되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

3 「중요한표시·광고시항고시」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(2001. 4. 1부터 효력 발생)

-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지원
 -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 업종을 현행 10개에서 의류업, 가구업, 주방용품업 등을 추가하여 20개로 확대함
 - 인쇄매체 및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상품의 포장·용기 등에 표시할 때에도 동고시가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함

<공정거래제도 개선사항 리스트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과
1	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 연장	• 부당대부거래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	• 2001. 2. 4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2004. 2. 4까지 연장(3년)	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	조사기획과 ☎507-0162
2-1	지주회사 관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	•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	• 모든 상장법인(협회등록법인 포함)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30%로 완화	동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(2001. 4. 1)	독점정책과 ☎503-9123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과
		총수의 50%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- 다만, 자회사가 '99. 4. 1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 30% 이상 소유 가능	•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20%로 완화		
2-2	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적용대상 확대	• 현물출자 방식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1년간 부채비율 제한 및 2년간 지분을 제한과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 예외 인정	• 현행 현물출자 방식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·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과 지분을 제한,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 예외기간을 인정	동법 제8조의2제1항 (2001. 4. 1)	독점정책과 ☎503-9123
3	부당공동행위 감면규정 적용 확대	•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조치 가능	• “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”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	동법 제22조의2 제1항제2호 (2001. 4. 1)	공동행위과 ☎504-4164
4	과태료 부과 한도 상향조정	• 조사 거부·방해 시 개인은 1천만원,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 부과	• 개인은 5천만원, 법인은 2억원으로 상향조정	동법 제69조의2 제1항 (2001. 4. 1)	심판관리 1담당관실 ☎504-5143
5	재판매가가격 유지행위 관련				
5-1	재판매가가격 유지행위 금지대상	•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가격 유지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	• 당해 상품을 가공하는 단계의 가격 유지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	동법 제2조제6호 및 제29조제1항 (2001. 4. 1)	유통거래과 ☎503-9511
5-2	최고가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적 허용	• 모든 재판매가가격 유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규정	•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	동법 제2조제6호 및 제29조제1항 (2001. 4. 1)	유통거래과 ☎503-9511
6	시정조치 등의 제한규정 완화	• 위법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	•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	동법 제49조제4항(2001. 4. 1)	심판관리 1담당관실 ☎504-5143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과
		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함	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른 새로운 처분은 가능		
7	조사대상 자료범위의 명확화	• 전산자료의 조사 대상 여부 불명확	• 전산자료 · 음성녹음자료 · 화상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대상범위에 포함	동법 제50조제2항(2001. 4. 1)	조사기획과 ☎507-0162
8	국세과세 정보요구 근거 규정 마련	<신설>	•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	동법 제55조의5 제4항 (2001. 4. 1)	총무과 ☎504-9470
9	과징금환급가산금제도 도입	<신설>	• 과징금 환급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 • 2001.4.1 이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	동법 제55조의6 및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(2001. 4. 1)	총무과 ☎504-9470
10	기업결합신고 의무 면제	<신설>	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, 벤처투자 등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	동법 제12조제2항(2001. 4. 1)	기업결합과 ☎507-1935
11	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 업종 확대	• 현행 적용업종 - 부동산중개업 - 학습교재판매업 - 학원운영업 - 증권투자업 - 장의업 - 체육시설운영업 - 할인카드회원권 운영업 - 사진현상 및 촬영업 - 화물자동차운수업 - 완구제조업 • 장의업종(수의)을 제외한 모든 업종	• 고시 적용대상 업종을 현행 10개에서 20개로 확대 ①의류업 ②가구업 ③주방용품업(식기, 썬크대, 정수기) ④보석 · 귀금속업 ⑤자동차부품업 ⑥투자지문 · 투자일임업 ⑦건강식품업 ⑧산후조리원운영업 ⑨유치원 · 보육시설운영업 ⑩공동주택업 • 소비자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상품의 포장 · 용기 등에 표시할 때에도 적용될 수	중요한표시 · 광고사향고시(안) (2001. 4. 1)	소비자기획과 ☎504-4162

번호	제 목	종 전	달리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과
		에 대해 사업자가 광고(인쇄매체 및 방송광고)할 때에 만 적용	있도록 규정 * 12. 2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의결시 확정		
12	출자총액제한 제도 시행	<신설: '99. 12. 28> <시행: 2001. 4. 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%를 초과하여 국내 다 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•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 한 신주 취득 (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함) -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 으로서 인한 주식 취득 (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함) - 사회간접자본사업(SOC)에 대한 출자(취득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함) - 기업구조조정 · 외국인투자유치 ·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자한도 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가능 (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함) 	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(2001. 4. 1)	기업집단과 ☎503-9125

경쟁이 꽃피는 경제를 만드는 잡지

월간 **공정경쟁**

혼자 뛰어서 1등을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 여러 명이 뛰어서 1등을 한 것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. 우리끼리 뛰어서 승부를 내는 것보다 다른 국가와 함께 뛰어서 1등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.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에서 발간하는 「공정경쟁」은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증진시키고, 경쟁이 꽃피는 경제를 만드는 공정거래 전문지입니다.

공정거래시책에 관한 정보, 학계, 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견해와 국내외 경쟁정책동향 및 주요 심결사례 분석 등을 수록한 전문연구지로 월 1회 발행됩니다.



◆ 연간구독료 : 100,000원 ◆ 정기구독 문의 : 조사부 / Tel.775-8870~2 / Fax.775-8873

회원사에 알립니다...

● 회원사 2001년도 공정거래 관련 업무계획

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각 회원사의 2001년도 공정거래 관련 업무계획이나 활동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2월 10일까지 본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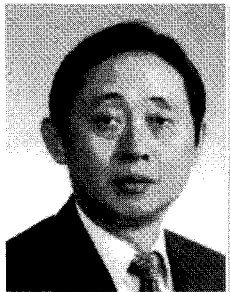
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

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,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TEL : (02) 775-8870 ~ 2 / FAX : (02) 775-8873

회원사 소식

신규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

제일제당(주)

대표 김주형

제조·도매업

충구 남대문로5가 500